

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조계숙의원외 6인

2. 발의 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4년 10월 13일
-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소속행정기관중 외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,
-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외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속기관으로 명칭변경하고
- 의회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중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도 교육청으로 개정

5. 검토의견

- 외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
직속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
-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중
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도 교육청으로
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붙 임 : 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● 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

제정 1991. 4. 6 조례 제1908호

개정 2003. 10. 10 조례 제277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육감
2. 부지사·부교육감
3.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·국장, 담당관, 실·과장급
4.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
5.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장 (교육장)
(개정 2003. 10. 10)
6.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
(개정 2003. 10. 10)
7. 충청북도 및 교육청의 외청 또는 사업소 소속공무원중 도본청 및 교육위원회의 실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

부 칙

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10 조례 제277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